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17742 판결 [공사대금청구의소 및 손해배상청구의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겸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원고승계참가인 1.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 김휘재

2. H

3. I

4. J

5. G

원고승계참가인 2 내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겸 피항소인

변호사 김대중, 법무법인 이안,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7172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115,272,727원 및 그중 51,272,727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3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5. 3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3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8. 3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각 2023. 5. 12.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위 금액 전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 ,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8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2020.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F에게 47,862,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이 사건 2022. 6. 30.자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승계참가인 H에게 27,673,604원, 원고승계참가인 I에게 11,949,520원, 원고승계참가인 J에게 37,932,166원,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19,5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서 각 승계참가를 하였다).

3.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2,543원1)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2022. 4.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8~9월경 피고로부터 C(주) 발주의 D 공사를 ‘공사대금 94억 6,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1. 15.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설비의 제작을 위하여 2019. 9. 23. 원고승계참가인 F으로부터 이천시 E 토지 및 지상 철골조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을 제10호증), 그 후 위 F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월차임을 5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9. 10. 23.부터 2021. 10. 22.까지(24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2020.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계약 이후에 발생한 금액 일금 3억 원에 임대보증금 5,400만 원을 제외한 2억 4,600만 원으로 정산한다.

2. 합의날짜 이전에 A(원고)에서 임대한 장비 및 기자재, 샵장(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 임

대로는 B(피고)에서 지급하며, 월 800만 원으로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3. 1항 합의된 금액 2억 4,600만 원 중 1억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B(피고)에서 지급

하며 나머지 1억 4,600만 원은 2020년 2월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1항 기재 정산금으로 2020. 1. 3.부터 2020. 2. 20.까지 합계 218,727,273원(부가세 별도, 이하 위 정산금은 세전 금액만 기재한다)을, 위 합의 제2항 기재 임대료로 2020. 2. 14. 8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위 임대료는 세전 금액만 기재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2)

원고승계 참가인	청구금액(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
1. F	68,900,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자 2021타채45855 결정	2021. 8. 19.
2. H	27,673,6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6.자 2022타채50121 결정	2022. 10. 13.
3. I	11,949,5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4.자 2022타채48779 결정	2022. 9. 19.
4. J	37,932,1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9.자 2022타채50069 결정	2022. 10. 6.
5. G	19,500,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11.자 2021타채4708 결정	2021. 11. 15.
합계	165,955,2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 11호증, 을 제30, 3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1항 기재 정산금 2억 4,600만 원 중 위와 같이 218,727,273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정산금 잔액인 27,272,727원3) 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장비 · 기자재 · 샵장(이 사건 건물) 포함 임대료’로 매월 8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0. 2. 14. 800만 원(1개월분)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대료로 1억 8,400만 원(= 800만 원 × 2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1)항 및 2)항 기재 합계액 211,272,727원에서 원고승계참가인 F의 피압류채권액 6,890만 원, 원고승계참가인 G의 피압류채권액 1,95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22,872,72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한다(다만, 이는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주장이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2023. 3. 29.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취지 금액만큼 당초의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2021. 11. 23.자 준비서면으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2)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임대차기간(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에 상응하는 ‘1년’일 뿐 원고 주장의 2년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방해로 인하여 2020. 3. 25.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종료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14,451,613원[= 800만 원 × (2개월 + 25/31일) - 기지급

800만 원(1개월분)]에 불과하다.

3)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합의 제1항의 정산금 잔액 27,272,727원과 제2항의 미지급 임대료 14,451,613원의 합계 41,724,340원인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위 피압류채권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 액수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공통 쟁점이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가. 피고의 정산금 및 임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27,272,727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료가 매월 8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임대차기간(2019. 10. 23.~2020. 10. 22.)에 상응하는 1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㉞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설비의 제작을 위하여 임차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 11. 15.부터 2020. 10. 30.까지로 약 1년 정도였다(갑 제1호증).

㉟ 원고가 2019. 10. 15.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제31호증)에는 임대차기간이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가 첨부되어 있었다.

㊱ 2019. 12. 19.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갑 제5호증)에서 원고 측은 ‘원고가 보유한

장비 등을 피고가 사용하고 월임대료는 피고 측이 지급하되, 임대료 지급은 2019. 10. 1.부터 소급적용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계약취소안을 제시하였다(위 회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 6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F 간의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피고도 알 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위 회의에서 원고가 위 건물의 월차임 6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이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변경된 임대차기간인 2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9. 12. 23.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공문(갑 제6호증)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샵장(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기간을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기재하였다.

㉯ 위 논의 이후 2020. 1. 2.에 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임대료 지급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서면이나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6면 9행부터 제7면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1항의 정산금 잔액 27,272,727원 및 제2항의 미지급 임대료 8,800만 원(= 800만 원 × 11개월)의 합계 115,272,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미지급 임대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0. 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기재와 앞서 본 합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임대료 지급을 2019. 10. 1.부터 소급적용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산정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 800만 원은 2019. 10. 1.부터 1년 동안,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월 임대료 지급의무는 각 지급기일인 ‘매월 30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므로 피고는 115,272,727원 및 그중 51,272,727원4)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1.부터, 800만 원(2020. 2.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5) 800만 원(2020. 3.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3. 31.부터, 800만 원(2020. 4.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800만 원(2020. 5.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5. 31.부터, 800만 원(2020. 6.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800만 원(2020. 7.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7. 31.부터, 800만 원(2020. 8.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8. 31.부터, 800만 원(2020. 9.분 임대료)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4.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내지 청구취지 기재 채권액보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청구금액 합계액 165,955,290원이 다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주장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금액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액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초과한 경우,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채무 전액인 “위 3의 다. 2)항 기재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위 금액 전부를 공탁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무조건적으로 특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민아, 판사 양석용

1) 위 항소취지 39,482,543원은, 원고 주장 금액 211,282,727원(단, 바른 계산은 211,272,727원이다)에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취지 금액 합계 144,917,457원과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원금 26,882,727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참고로, 갑 제22호증은 원고승계참가인 F이 위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기록상 위 전부명령이 채무자에 대해 송달되지 않는 등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F은 추심채권자(을 제30호증 참조)의 지위만 갖는다.

3) 원고나 피고는 위 금액을 27,282,727원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산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여, 27,272,727원으로 바로 잡아 기재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4) 이 사건 제1항 정산금 잔액 27,272,727원 + 이 사건 합의 제2항 미지급 임대료 중 2019.

11.분부터 2020. 1.분까지(3개월) 미지급 임대료 합계 2,400만 원

5) 지급기일인 2020. 2. 29.의 다음 날이고, 이후의 각 800만 원에 대해서도 각 지급기일인 매월 30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